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25. 6. 27.

운영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: 2025년 5월 30일

나. 발 의 자: 김지연 의원 외 3명

다. 회부일자: 2025년 6월 9일

라. 상정일자: 제261회 영등포구의회 2025년도 제1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(2025. 6. 20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김지연 의원)

가. 제안이유

❍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, 별표에 기재된 일수를 정비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❍ 배우자의 출산 시 휴가일수 확대(안 별표 3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류데레사)

□ 개정 배경 및 취지

❍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이 자녀 출산 직후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돌봄을 강화하기 위하여 ‘배우자 출산휴가 기간’을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자 개정(2024. 10. 22.)되었으며,

- 이에 따라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은 이를 반영하여 개정(2025. 2. 11.)되었고, 더 나아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휴가 기간을 15일에서 25일로 확대함.

□ 주요 내용으로

❍ 안 별표3은 ‘배우자의 출산’시 10일→20일로, ‘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’ 15일→25일로 각각 경조사 휴가를 10일씩 확대함.

□ 검토결과

❍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출생 문제가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,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를 통해 출산 및 양육 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.

❍ 또한 지난 6월 13일, 구청장이 제출한 동일한 내용과 취지를 담은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을 심사하여 원안가결된 바 있음.

❍ 이에 따라 영등포구의 집행기관 및 의결기관 공무원 간의 복무 기준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도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됨.

4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지연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524

발의연월일: 2025. 6. .

발 의 자: 김지연·최봉희·이순우 전승관 의원 (4인)

1. 제안이유

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, 별표에 기재된 일수를 정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배우자의 출산 시 휴가일수 확대(안 별표 3)

3. 개정안: “별첨”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

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

다. 입법예고: 해당 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1항과 관련하여, 별표 3 배우자의 출산 시 일수란에서 “10”을 “20”으로 하고,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“15”를 “25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